

1. 그리스(Greece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: 1934년
- 현행법: 1951년(사회보장), 1960년, 1978년(법령과 규정), 1990년(규정), 1991년(연금), 1992년(사회보장), 2000년(재정 및 관리), 2002년(사회보장), 2004년(사회보장), 2008년(사회보장), 2010(사회보장), 2011(사회보장), 2012(연금), 2012(재정전략), 2015(연금), 2016(연금개혁), 2016(사회보장 조정)

2. 제도형태

- 보편제도, 사회보험제도, 사회부조제도

3. 적용대상

- 보편제도: 그리스 영구 거주자
- 사회보험제도: 산업/상업 근로자, 자영자, 농업근로자, 공공부문 근로자, 기타 직종, 임의가입 가능
- 사회부조제도: 유럽연합, 유럽경제지역, 스위스에 영구 거주하는 연금수급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
 - 보편제도: 없음
 - 사회보험제도
 - 월 기준소득의 6.67% (힘들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의 근로자 12.15~16.04%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액은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
 -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€586.08; 25세 이하이며 경력 3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€510.95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액은 월 €5,860.80
 - 사회부조제도: 없음
- 자영자
 - 보편제도: 없음
 - 사회보험제도
 - 14개의 보험 분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 월 신고 기준소득의 20.0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액은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

-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€586.08; 25세 이하이며 경력 3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€510.95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액은 월 €5,860.80
- 사회부조제도: 없음

○ 사용자

- 보편제도: 없음
- 사회보험제도
 - 월 임금총액의 13.33%(힘들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 18.41%~23.16%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액은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
 - 미혼인 육체노동자의 최저월급은 €586.08; 25세 이하이며 경력 3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€510.95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은 월 €5,860.80
- 사회부조제도: 없음

○ 정 부

- 보편적: 비용 전액
- 사회보험제도: 사용자로서 납부, 연 보조금 일정액을 보장
- 사회부조제도: 비용 전액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: 두 가지로 구성됨(국가연금 및 기여연금)

- 국가 노령연금(보편제도): 67세 이상이고 그리스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여형 노령연금 기여조건에 부합하는 자
- 부분국가노령연금(1993년1월1일 이전 최초 가입된 경우):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4,500일 이상이며 62세 이상인 도달자 (최근 5년간 납부일 100일 이상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0,000일 이상인 62세(남자), 12,000일 이상인 62세(여자) (최근 5년간 납부일 100일 이상)
 - 피부양자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5,500일 이상이거나 18년 이상이며 62세 도달자
 -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힘들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조건 적용
 - 부분국가노령연금(1992년 12월 31일 이후 가입된 경우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6,000일 이상인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여성에게 지급

- 조기국가노령연금: 부분국가노령연금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함
- 기여형 노령연금 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2,000일 이상인 62세 도달자 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67세 도달자
 - 1993년 1월 1일 이전 최초 가입된 경우, 보험료 납부기간이 4,500일(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여성의 경우 5,500일)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연금을 위한 연령은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67세까지 올라감
 - 피부양 장애아동, 배우자,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, 보험료 납부기간이 7,500일 이상이며 55세 도달한 자(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62세로 올라감)
 -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힘들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조건 적용
- 연기연금(국가연금 및 기여형 노령연금): 노령연금 연기 가능
- 상호협정에 따라 노령연금 국외지급 가능
- 사회연대수당(소득 조사함)
 - 그리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(80%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경우 연령 제한 없음), 혹은 고아연금 수급하는 완전고아. 특별장애수당은 점차 폐지되고 국가 노령연금으로 대체 수순을 밟고 있음.
 - 소득조사: 연 최대 소득총액은 (임금 및 연금) €8,88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, 연 가족소득총액은 €11,000 초과하지 않아야 함, 월 연금소득 총액 €643 초과하지 않아야 함
 - 상호협정에 따라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 - 상시간호수당: 영구적 시력 상실자

○ 장애연금

- 국가 장애연금 (기초제도): 기여형 장애연금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
- 기여형 장애연금 (사회보험제도)
 - 장애발생연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300일~4,500일(가입자가 1993년 이후 처음 근로를 시작한 경우는 1,500일)이며 중증장애(80%~100% 판정) 또는 일반장애(67%~79.9% 판정)가 있거나, 또는 장애발생 이전 5년 중 600일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대 1,500일인 자
 - 1993년 이후 처음 근로를 시작한 자 장애발생 이전 5년 중 납부한 보험료 납부일수에 보험료 납부인정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
 - 상시간호수당: 장애가 심각해 일과에 타인의 보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정된 자
 - 부분장애 (국가, 기여형): 장애정도가 50%에서 66.9%로 판정된 경우 감액 지급
 - ※ 매2년마다 사회보험청 건강위원회에서 장애정도 심사
 - 상호협정에 따라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- 특별장애수당 (사회부조제도)

- 국가에서 지정된 질환환자이며 67% 이상의 장애정도로 판정받은 가입자 및 수급자 혹은 그 가족에게 지급
- 장애 발생하기 전 15개월 내에 50일 이상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장애가 발생하기 직전의 4년 중 35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거나 총 가입기간이 1,000일이여야 함.
- 특별장애수당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, 2016년 5월 13일 이후로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.
- 상호협정에 따라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 (사회보험제도, 기초제도)
 - 수급요건은 가입자가 노령 또는 장애요건 수급요건을 충족했거나(일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) 혹은 기여형장애연금 납부 수급요건의 1/2을 충족해야 함.
 - 수급 대상
 - 사망한 가입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(예외 있음)
 - 이혼한 배우자가 67세이거나 이혼수당을 받고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제한된 소득이 있는 경우
 - 18세 미만 피부양 자녀, 계자녀(학생인 경우 24세 미만,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) 다만, 미혼이고 근로하지 않으며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
 - 재혼하면 연금 중단됨
 - 상호협정에 따라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- 장례 보조금 (사회보험제도)
 - 가입자가 사망 당시 전년도 가입기간이 최소 120일 (건설업은 100일 이내) 이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국가 노령연금(기초제도)
 - 20년 이상 납부한 40년 이상 거주자에게 월 €384 지급
 - 부분 국가노령연금: 납부 20년에서 부족한 만큼 1년당 2% 삭감, 거주 기간 40년에서 부족한 만큼 1년당 2.5% 삭감
 - 조기 국가노령연금: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청구할 때 1개월당 0.5% 삭감, 2015년 8월 19일 이후 수급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할 때 까지 0.55% 삭감, 그 이후 0.5% 삭감
- 기여형 노령연금 (사회보험제도)
 - 가입기간 및 2002년부터 청구일까지의 평균연금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됨

- 평균연금소득이란 2002년부터 청구일까지 가입자의 총 기준소득월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임
 - ※ 이자율은 가입연수에 따라 달라짐 (15년은 0.77%, 39년은 2%).
- 최저 노령연금액 제한 없음.
- 2016년 5월 13일 이후 연금을 청구한 경우 최대 연금액 제한 없으며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금액은 월 €2000임
- 연기연금 가능
- 연금은 매년 GDP성장을 및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- 사회연대수당 (사회부조제도, 소득조사)
 - 연 순소득 €7,720 이하인 자에게 월 €35 지급
 - 급여는 정부에서 조정됨

○ 장애연금

- 국가 장애연금 (기초제도):
 - 장애판정이 80%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의 100% 지급; 67%~79.99%인 경우 75% 지급; 50%~66.99%인 경우 50% 지급; 49.99% 이하인 경우 40% 지급
 - 완전노령연금액은 월 €384
 - 20년 미만 납부자는 부족한 1년당 연금을 2%씩 감액
- 기여형 장애연금 (사회보험제도)
 - 기여형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.
 - 중증장애의 경우 기여형 노령연금의 100% 지급; 일반장애의 경우 75% 지급
 - 상시간호수당: 매월 지급
 - 부분 장애: 기여형 노령연금의 50% 지급
 - 최저 장애연금액 제한 없음.
 - 2016년 5월 13일 이후 연금을 청구한 경우 최대 연금액 제한 없음
 - 이전 가입자들의 지급액 최한도는 €2,000임
- 특별장애수당 (사회부조제도)
 - 비숙련근로자의 법정 최저일금의 20배 지급, 비숙련근로자의 법정 최저일금은 €33.57
 - 급여는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(사회보험제도, 기초제도)
 -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사망한 달의 익월부터 3년간 지급
 -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지급

- 근로하지 않고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
-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
- 67% 이상의 정신, 신체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
- 배우자 사망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
- 유족 배우자가 근로하거나 다른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지급
-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 중에 55세가 되었을 경우, 3년간 연금 지급되고 그 이후 67세부터 다시 지급됨.
- 사망자가 정년 이후 결혼한 경우 연금이 감액됨
- 배우자연금 최저연금액 : €360
- 고아연금
 - 각 수급대상 고아에게 사망한 부모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지급함
 - 완전 고아의 경우 50% 지급, 고아연금 최저연금월액은 €360임
 - 월 최대 유족급여액은 사망한 부모가 수급 또는 수급권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
 - 연금은 1년에 12회 지급됨.
 - 연금은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장례지원금 (사회보험제도): €760~1200을 일시금으로 지급.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 - <http://www.ypakp.gr>
 - 전반적 감독
- 통합사회보장기금(EFKA, Unified Social Security Fund)
 - <http://www.efka.gov.gr>
 - 지사를 통한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정부 및 이사회에 의해 관리됨

<2018년 ISSA 자료>